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12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박민규 · 문진석 · 박정현
정태호 · 이학영 · 김동아
민형배 · 이춘석 · 윤준병
서삼석 · 서미화 · 김남희
최혁진 · 노종면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 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 비스 제공 대상자로 본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